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공고 제2026-01

□ 공 사 명 :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1.2. 공사현장: 불임 시방서 참조

※ 세부내용은 설계서 등 열람(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추정금액: **87,95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관급액(C)	추정금액(=A+B+C)
79,954,546	7,995,454	0	87,950,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5. 기초금액: **87,95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2.1. 본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는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2.2.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2.3.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2.4.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5.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6.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285	865,815	86,104

- 2.6.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한 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5,871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2.7.1. 견적제출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고시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 업체는 무효 처리

-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4.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 5.1.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 6.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7.2.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3. 무효견적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7.3.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8.1.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 8.2. 개찰장소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8.4.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7.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1.2.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4.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 공고 관련 내용 숙지

12.1.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 13.1. 견적제출자는 「충남대학교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담합, 불법 하도급 등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 인터넷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대학정보」-「청렴행정」-「클린신고」
- ※ 전화 : 042-821-5141(충남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 우편 : 우)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 관련 지침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대학정보」-「학칙규정」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14.1.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042-821-7158)
- 14.2. 공사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042-821-7148\)](#)
- 14.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14.4. 본 공고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4.6. 견적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4.7.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4.8. 계약상대자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일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9. 본 공고에 명시된 규정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15. 안전·보건 관련 사항

- 15.1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2]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15.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일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사 업 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업 체 명)는 (사 업 명)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업 체 명)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연락처	주소	[] 단체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